

2016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사업 대상자	○ 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하인자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
	○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귀농지원법상 사업대상자는 6년 미만의 범위에서 선정 가능 조항 적용
	○ (거주기한) -제대군인, 세터민, 제소자 거주기한 제한 없음	○ (거주기한) -직업군인, 세터민 거주기한 5년 신설, 제소자 제외	제소자는 제소기간 주소지 미이전, 타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사이버교육,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50시간 인정	○ 최대 40시간 축소 ○ 농작업 포함	농촌현장, 지자체 교육 등 현장실무형 귀농교육 확대 필요성
	○ (교육설적) 교육시간 100시간	○ (교육설적) -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항목 포함	귀농인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귀농 현실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마련 ('16.7월부터 시행)
3. 자금의 용도	○ 농촌비즈니스 -펜션, 민박, 농촌레스 토랑	○ 농촌비즈니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촌레스토랑 개선	농어촌정비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명확화
	○ 주택자금 활용처에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포함	귀농인의 읍면단위 공동주택 거주지 확대

- 1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지원 형태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7%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0%	귀농인 부담 완화를 통한 자금활용 확대
5. 사업자 선정	<신설>	○지자체에서는 농지가격의 상승, 농지의방치,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농지 가격상승 및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방지
6. 사후 관리	<신설>	○(승계)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조항 신설	대상자의 사망시 “승계”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신설>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불법 자금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2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박혜정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장 이승옥	02-2080-7583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00	600	700	1,000	1,500	1,500
용 자	500	600	700	1,000	1,500	1,500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3 -

-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 연령기준 시행일: 만 65세 이하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함. 다만, 만65세 초과 귀농인 중에서 2015.12.31일 기준 50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 ①(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②(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 주소이전(귀농인)
-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용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하는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 7.1일 이후 적용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의 대상 >

- 5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의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을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과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 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 “**농업용화물자동차**”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

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iii)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 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충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응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 납유워터와 납유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 7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응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응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응자방식>

-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8 -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정책에 따른 사후 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개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에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사본 등을 해당자 제출

- 9 -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 각 지자체에서는 2016.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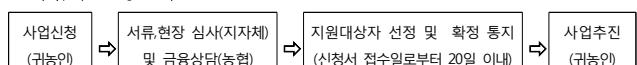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응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개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10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 금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히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 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11 -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정구(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12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응자금 지원연도부터 응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응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응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응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귀농인이 사업자금 응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응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응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개신하여야 하며 응자금 및 응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 13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응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응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IV.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 청·군청(또는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할 계획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용지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주소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e-mail :	
	귀농 후				
	학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m ² , - 저잣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m ² - 농기계 :				
사업 신청 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농업창업		보조	
		주택구입·신축		용자	
		농촌비즈니스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증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15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죽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m²)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유								
임차								
계								

② 시설현황(동/m²)

	창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벼섯 제배사				기타
소유	/	/	/	/	/	/	/	/	/
임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

④ 재배현황(m²)

계	벼	보리	사과	배	포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 17 -

4.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m ² , 대)	사 업 비(백만원)				자담
				계	정부지원(제원기재)			
계	계	계	계		국고	용자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유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m²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 18 -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제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제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훠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 19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화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회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회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구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 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 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군	합계														
	남														
	여														

- 21 -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구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 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군	합계														
	남														
	여														

- 22 -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1,000㎡	15,000	15,000		'14. 6.1.~7.3.
양 돈 입 식	30두	15,000	15,000		'14. 6.1.~6.15.
농 지 구 입	3,000㎡	30,000	30,000		'14. 6.1.~6.3.
주택 구입·신축	150㎡	20,000	20,000		'14.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용자 취급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원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증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 25 -

(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자액		미융자액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경기						
제주						

* 복기별 신정우 능재로 칭재하여 장선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명 :

- 주소 :

(연락처 :)

○ 면적 : 연면적 m², 주택전용면적 m²

○ 신축연도 :

○ 구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 27 -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소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진 (반명합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후 주소	
	(귀농전 직업 :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우편번호 :
	⑧회중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정착자금(용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분	기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년월일)	내역	실시기관명
병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m ² , 두, 수 등)							
영농기반 ~ 본인 소유 · 승계 대상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m ²)						
	○ 시설(우사, 돈사, 비닐하우스, 유틸리온실, 저온냉장고, 스프링클러등) 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영농 실적 (천원)	농업조수익 농외소득 경영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 수준							
농가 면담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간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사자 직·성명							

- ① 매년도 말 기준으로 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 ⑤ 농업소득 산출 과정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지자체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자체장(직인)

- 31 -

귀농인 확인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 인은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영농승계 확인서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보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획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벼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 확보(2008.1월)	중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중여
.					
.					

영농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 33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예시]

* 관리대장 양식이나 보관 방법(대장, 엑셀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좋은 방식을 선택하여, 귀농인에 대한 기초사항과 관리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비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3	1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 실적 (30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0	26	23	2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역체육교)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지역체육 교육시간은 150%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업(예: 선인장 등) 세배증거에서의 실습실적(세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증명서로 인정 가능 * 농과개종업자,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전입 후 농촌거주 (20점)	거주기간	20	17	13	11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책 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책 의욕	10	8	7	5	A : 영농정책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책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책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책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명서, 상단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책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7	5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족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족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족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35 -

평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제비지역, 제배 기준상의 적합성 및 타동가 계획 작성여부(계획 (3회)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물인단체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책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역체육시간(8시간) 초과 이수자 / 세대주 연령 30세이하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자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